
예술원사무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2026. 9.

예술원사무국

목 차

제1조(목적)	1
제2조(용어의 정의)	1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근거 및 목적)	1
제4조(안내판의 설치 및 부착장소)	1
제5조(사전의견 수렴)	2
제6조(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접근권한자)	2
제7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관 등)	2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2
제9조(개인영상정보의 파기)	3
제10조(사전의견 수렴)	3
제11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3
제12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4
제13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4
제14조(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4
제15조(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령)	5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6
제17조(준용규정)	6
제18조(비밀유지의무)	6
부 칙	6
[별지1호 서식]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 청구서	7
[별지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예술원사무국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저장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라 함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인영상정보 담당자"라 함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영상정보 업무를 처리·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5.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근거 및 목적) 예술원사무국의 미술전시실 및 수장고의 안전관리와 도난사고 예방 등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예술원사무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안내판의 설치 및 부착장소)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출입문 등에 설치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관리책임자·연락처

제5조(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 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다만 동일 목적으로 단순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처리 및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진흥과이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업무담당자)는 아래와 같다.

구분	담당과장 및 담당자	소속	연락처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과장(강은아)	진흥과	02-3479-7230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주무관(이슬)	진흥과	02-3479-7235

제7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관 등)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2.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3. 보관장소 : 예술원사무국 전시실
4.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예술원사무국 청사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예술원사무국 전시실	6대	전시실 내부(5), 전시실 외부/출입구(1)
예술원사무국 수장고	2대	수장고 내부

제9조(개인영상정보의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는 보관기간 만료 시 자동 삭제

③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0조(개인영상정보 수집의 제한)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할 수 없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1. 정보주체는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2.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 청구서'로 하여야 한다.

3. 관리책임자는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때에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4.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5.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6)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업무 처리 담당자

제12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제11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확인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확인방법: 정보주체는 해당 민원의 소관 부서를 경유하여 영상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열람 등의 확인을 요구
2. 확인장소: 진흥과

제14조(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 ①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성명)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제15조(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6.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7.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처리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본 지침은 2026년 9월 00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2.01.01 18:30 ~ 2012.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예술헌사무국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